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50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백혜련·천하람·정동영

김기표 • 서미화 • 이수진

김영환 · 오세희 · 민형배

문진석 • 이원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한 금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와 같이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을 법률에 규정하여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압류금지)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4조의2(압류금지) 배분대상자
	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